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4시 48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도시계획과	3
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	3

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

2022.03.31 조회수 768 등록자 김준현
15:56

✓ 민원사무명	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
✓ 민원내용	이 민원은 토지형질변경, 건축물의 건축,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
✓ 관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
✓ 구비서류	- 준공사진 - 지적측량성과도(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)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✓ 처리부서	도시계획과
✓ 협의부서	개발행위 관련부서(예시 : 도로점용 - 도로시설관리과)
✓ 접수	인터넷, 방문, 우편
✓ 수수료	수수료 없음
✓ 처리기간	7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접수 →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 → 보완(필요시) → 준공필증 교부
✓ 기타참고사항	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별지 제6호서식]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2367 hit/ 17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Yeosu Web Contents

